



알버타저널 발행인 안길웅

발행인의 데스크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 주한미군과 평화협정

6월25일, 화요일은 Land of morning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세계에 알려졌던 우리 조국 강산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 터로 변해 버린지 69년이 되는 날이다.

1950년 6월25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 날이었다. 69년이라는 세월이 조국 강산을 거쳐 지나갔지만 한민족의 소원인 조국 한반도의 통일은 아직도 이상과 현실의 격랑 속에서 맴돌고 있을 뿐 우리 눈앞에 다가 오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밀월(?)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반도를 쳐다 본다면 6.25 때 남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유엔 회원 16 국가들은 지난 69년 동안 부질없이 세월을 낡으며 지나오고 있지 않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소개하는 두 글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자.

한미 연합 사령부가 창설된 배경과 원인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동안 주한 미군 부사령관이 맡아 오던 주한 유엔군 부사령관직에 처음으로 미군이 아닌 캐나다군 3성 장군이 임명됐다는 사실은 캐나다 한인동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해준다.

아래 두 글은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른 매체에서 발췌한 글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글 쓰야: 한국국방개혁연구 소장 권영근

최근 언론에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경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할 것이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배경과 의미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다국적군을 염두에 둔 지휘구조다.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1950년 6월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적대행위를 종료한 후 38선 이북으로 퇴각을 촉구하는 결의안 82를 발표했다. 1950년 6월 27일에는 "한반도 지역에서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을 복구할 목적"에서 대한민국에 유엔 회원국들이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 83을 채택했다. 1950년 7월7일에 채택된 결의안 84에서는 대한민국에 군사력과 여타 원조를 제공하는 회원국들의 경우 "이 같은 전력과 여타 지원을 미국이 유지하는 특정 Unified command에 제공하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Unified command는 유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였다.

1950년 7월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군 육군, 해군 및 공군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다. 그런데 이는 한반도 전쟁을 단일 지휘관이 지휘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1950년 6월 28일 대전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무초 미국대사는 본국의 지령에 근거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의 요청에 따라 장군이 투르먼 대통령을 만난 1950년 6월27일 투르먼은 작전통제권을 넘기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1950년 8월29일 부산에 도착한 영연방 27보병여단은 당시까지 한국군과 미군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던 유엔군사령부 휘하로 들어왔다.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디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터키 군이 유엔군사령부 휘하로 들어왔다.

1953년 7월27일 유엔군사령부와 북중사령부(Chinese-North Korean Command)가 한반도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6.25 전쟁에서의 전투가 종료되었다. 당시의 정전협정으로 인해 정전협정에 서명한 대표들로 구성되는 정전협정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전협정위원회는 정전협정 조건 준수를 감독할 목적의 것이었던 반면 중립국감시위원회는 남북한의 전력 증강에 관여할 정전 당시 제한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목적의 것이었다.

1950년대 당시 북한은 정전 조건을 무시한 채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켰다. 이 같은 북한군 전력 증강을 북한을 대변하고 있던 중립국 감시위원들이 간과함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추방을 주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립국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감시, 조사 및 기록에서 시 및 조사 기능을 중지시키고는 기록으로 제한시켰다.

군사정전위원회의 경우 유

엔군 측 대표를 미군이 유지하다가 1992년에 한국군 장교로 교체되었다. 북한 측은 중국군, 북한군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가 그 후 북한이 단독 대표로 바뀌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82, 83, 84에서는 유엔군사령부 휘하 전력이 유엔군이며, 유엔이 6.25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유엔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있던 전투 전력을 지휘 통제하지 않았다. 이들 전력에 대한 지휘 통제는 6.25 전쟁에 가장 많은 인력을 제공해준 미국이 행사했다.

오늘날 대부분 전문가들은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있던 전력이 법적으로 유엔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유엔의 조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엔군은 집단 자위권에 입각하여 작전을 수행한 동맹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84의 경우 유엔군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국가에 더불어 유엔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다.

1994년 유엔사무총장 갈리는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휘하에 Unified Command를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 단군이 이 같은 사령부의 창설을 권유하고는 이 같은 사령부를 미국 휘하에 두도록 언급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여부는 유엔 기관이 결정할 책임이 없으며 미국 정부 재량의 문제다."

후전 이후부터 1978년 11월 7일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기 이전 25년 동안 한국군 장교가 단 한 명도 없던 유엔군사령부가 한국군을 작전 통제했다.

1978년 11월 7일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던 것은 1970년대 초반에 자유중국(대만)을 대신하여 중공이 유엔상임이사국이 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던 비동맹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들어온 결과였다. 이들은 유엔군사령

부 해체를 요구했던 것이다. 1972년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대체할 사령부 창설을 구상했다. 그 결과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것이었다. 그 후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지만 유엔군사령관은 더 이상 군사력을 지휘 통제하는 권한은 행사하지 않았다.

미국이 명목상이나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한 것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자유진영의 대표가 16개국을 대표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사실 때문이었다. 이는 정전협정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명목상이나 유엔군사령관이란 직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였다. 두 번째는 1954년의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대상이

단순한 미군 장교가 아니고 유엔군 사령관으로서의 미군 장교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면 국가의 주요 군사 주권에 해당하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특정 국가인 미국에 위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셋째는 전시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증원전력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은 이들 기지에서 이룩하는 전력이 유엔군을 지원할 목적의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면 상기 3가지 이유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던 중국이 명목상이나 유엔군사령부 유지에 동의했던 것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란 부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추진하던 1970년대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및 중국과 이들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한 바 있었다.

최근 언론에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것이라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유엔군사령부는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해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 문제와 주일미군 기지를 전시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법적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하는 부분이며,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54년에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정전협정 또는 평화협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주한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장성 취임

제3국 첫 선임 사례

글 출처: 조국 중앙일보

주한 유엔군사령부(UNC) 부사령관에 캐나다 국적의 웨인 에어 중장이 2018년 7월30일 취임했다.

유엔군사령부(1950년)가 창설된 이래 유엔사 부사령관에 미군이 아닌 제3국 장성이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어 부사령관은 이날 평택 미군기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많은 사람이 캐나다가와 3성 장군을 한국으로 보냈는지 궁금해했다"며 "지난 세기에 걸쳐 우리 캐나다 군대는 (미군과 함께) 전 세계에서 하나의 세력이었고, 북미지역에서 긴밀히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아달라는 미국 측 요청이 왔을 때 캐나다 국방부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모두의 관심



사"라고 강조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축하사에서 "지금까지 유엔사의 고위 간부는 한미연합사 혹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 개 혹은 두 개의 직책을 겸임했는데 오늘 취임한 유엔사 부사령관은 한 가지 직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향후 유엔사 운영의 원칙으로 정전협정 이행 감독 및 북한과의 대화,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으로부터 독립적인 유엔사 운영, 제3국 장교의 유엔사 보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내달 임명되는 유엔사 참모장도 유엔사 보직만 맡도록 하고, 오는 9월 혹은 10월에 임명하는 군사정전위원회 간부도 유엔사 이외 보직은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통합사령부 창설을 결의함에 따라 미극동사령부를 모체로 일본 도쿄에서 창설됐다.

1957년 7월 1일 도쿄에서

서울 용산으로 사령부를 이전했고, 올해 6월 29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전했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로 정전협정 준수를 감독하며 남북 쌍방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사진설명: 신임 주한 유엔군 부사령관 웨인 에어 중장 (오른쪽)